

대구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제정 2010.08.02. 교무위원회)
(개정 2018.04.25.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개정 2020.03.09. 교무위원회/자구수정)
(개정 2022.01.05. 운영위원회)
(개정 2024.03.25. 교무위원회)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구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정관』에 따라 대구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산학협력단은 각종 산학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의 업무를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기획·조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증진 한다.

제3조 (업무)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한다.

1. 산학연협력관련 부속기관의 행정지원 및 조정
2.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3.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4.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5.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7. 기타 산학협력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 2 장 조직 및 운영

제4조 (단장 및 부단장의 자격) ① 단장은 대구예술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이거나 7급 이상의 직원 또는 대구예술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또는 동등한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인이나 직원으로 보하며, 외부인사를 임용할 경우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명한다.(2024.03.25.)

② 부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거나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22.01.05.)

제5조 (부서 및 업무) ① 산학협력단에 산학협력팀을 두며, 특정목적의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단 또는 사업팀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03.09.)

② 특정 목적의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단 또는 사업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조 (조직 및 임면) ① 각 팀에는 팀장, 직원, 연구교수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② 팀장은 우리 대학교 또는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예산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직원, 연구교수 및 조교를 임용할 수

있으며, 이들의 근무기간, 보수, 복무 등 계약조건과 처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④ 제5조제2항의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단과 사업팀의 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제6조의 2(비밀유지의무) 산학협력단 업무에 종사한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 (권한의 위임)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8조 (구성) ①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

② 당연직위원은 산학협력단의 단장, 부단장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학협력팀 직원으로 한다.(개정 2020.03.09.)

제9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학협력 사업의 기획·조정
2. 예·결산 심의
3. 정관의 변경 및 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10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12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소집)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4조 (소위원회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 또는 특별사업팀을 운영할 수 있다.

제 4 장 회계

제15조 (회계처리기준)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정관과 이 규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교육부에서 고시한 산학협력단회계처리기준을 준용한다.

제16조 (회계관리) ①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산학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② (특수업무담당수당) 위 항의 회계관리 업무를 포함한 다음의 특수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해당금액을 매월 특별수당으로 지급한다.(개정 2018.04.25.)

1. 경리, 예·결산, 회계업무 : 50,000원
2. 기타 산학협력단장이 지정하는 업무 : 50,000원

제17조 (회계기관 지정) ① 회계기관은 산학협력단이 된다. 다만,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회계관리 능력이 있는 부속연구기관 등을 분임회계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예산의 편성 및 확정) ① 단장은 회계연도 개시 20일전까지 산학협력단의 예산을 편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산학협력단의 예산을 심의·확정하여야 한다.

제19조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① 단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결산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의 결산을 심의·확정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0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수업무담당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16조(회계관리)의 ②항(특수업무담당수당)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서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03.2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